2025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종합감사 결과

1. 실지감사 기간 : 2025. 11. 24.(월) ~ 11. 28.(금)

2. 감사범위 : 2024. 6. 1. ~ 2025. 10. 31.(1년 5개월) 중 수행업무 전반

3. 대상부서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 부서

4. 감사결과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계			징계 요구	경고 요구 (인원)	주의 요구 (인원)	개선 요구	권고	통보			현지 조치
총 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			일반	시정 완료	모범 사례 (인원)	
15	2	-	-	1 (-)	1 (-)	5	-	5	1	2 (2)	2

가. 세부 지적 및 처분 내역

연번	제목	지적사항	조치할사항	처분요구
1	「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지침」 규정 미비	◦ 기획평가원의 「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지침」이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(現 성평등가족부)의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 대비 미비함 - 당사자간 해결(합의, 종결),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명시, 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내용 부재	① 「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지침」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하기 바람 ② 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의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충상담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기 바람	① 개선요구 ② 통보
2	겸직 및 타업행위 승인절차 위반	◦ 직원이 겸직 또는 타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평가원의 「겸직 및 타업행위 관리지침」에 따라 사전 신청이 원칙임 ◦ 감사결과, 사전 신청을 위반한 사례는 19건이고 신고지연일수는 최소 62일에서 최대 563일 임	① 겸직 및 타업행위 승인 업무에 대한 감독.운영을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 대하여 부서경고 조치하기 바람	① 부서경고요구

연번	제목	지적사항	조치할사항	처분요구
		- 문제점 분석 (직 원) 복무의식 결여 등 (관리감독) 복무부서의 모니터링 기능 부재 등 (제도운영) 승인절차가 형식화 되어 사후신고 관행화 등	② 겸직 및 타업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,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겸직 및 타업행위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	② 개선요구
3	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 등 자체 규정의 상위 법령 정합성 미흡	◦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을 기획평가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기획평가원의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에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상충됨 ◦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서 정한 기본사업 이자 사용 요건을 기획평가원의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등 상위 기준 반영이 미비함	① 제재처분의 권한 주체 및 이자 사용 요건 등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을 개정하기 바람	① 개선요구
4	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및 관리 체계 정비	◦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에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폐지되었음에도, 기획평가원의 「연구윤리규정」에는 검증시효를 5년으로 유지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미반영함 ◦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나, 기획평가원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·처리에 관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아 연구윤리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미흡함	① 부정행위 검증 시효 등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「연구윤리 규정」을 개정하기 바람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연구윤리 제보 처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	① 개선요구 ② 통보
5	주거래은행 선정 및 자금 운영 기준 미흡	◦주거래은행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1년씩 협약을 자동 연장하고 있음 ◦또한 자금 운영 시 주요 은행에 직접 우대금리를 확인하지 않고,	◦주거래은행의 경쟁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, 이자수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	① 통보

연번	제목	지적사항	조치할사항	처분요구
		우리은행에서 주요 은행 예금금리 비교표를 제시받아 우리은행 상품으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어, 주요 은행별 예금금리는 고시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리은행만 고시 금리에 우대금리를 가산하여 비교·선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금운영의 공정성과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		
6	참여연구원의 본인 수행과제 선정 평가·심의 부적정	◦ 기획평가원의 「기본사업운영요령」에 따르면 과제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시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등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◦ 그러나 2025년도 기본사업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, 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연구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본인이 수행할 과제가 포함된 기본사업 연구계획 안건을 심의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함	◦ 기본사업 선정 평가·심의 시 이해관계자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대하여 부서주의 조치하기 바람	① 부서주의요구
7	인쇄·복사물 등 단가계약 관리 부적정	◦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인쇄·복사물 등 단가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, 기획평가원의 「인쇄물 출입업체 선정지침」을 마련하여 인쇄물 출입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추정금액이 경쟁입찰에 해당됨에도 수의계약으로 운영함 ◦ 또한 다수공급자 계약에 해당되는 내부지침 「인쇄물 출입업체 선정지침」에 대하여 「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에 따른 기획재정부(現 재정경제부)장관 보고·승인을 받은 바 없음	◦ 인쇄·복사물 단가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사무를 이행하거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승인받아 시행하기 바람	① 통보

연번	제목	지적사항	조치할사항	처분요구
8	계약담당자 재정보증 미흡	◦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계약사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, 계약담당자는 재정보증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◦ 그러나 계약업무 담당자(1인)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, 3건의 계약업무를 처리함	◦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바람	① 통보 (시정완료)
9	공용차량 배차신청 및 차량 운행일지 관리 미흡	◦ 행정안전부 「공무용 차량 관리. 운영 매뉴얼」에 제시된 차량 운행일지 서식과 다르게, 기획평가원의 「공용차량 관리지침」의 차량운행일지 서식에는 행선지(목적지, 경유지) 항목이 없음 ◦ 또한 감사결과, 배차신청 내역이 차량운행일지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됨 - (불일치 사례) 배차신청 후 미이용, 배차 신청일과 이용일 불일치, 배차신청 누락 등	① 차량운행일지 서식에 행선지를 포함하도록 「공용차량 관리지침」을 개정하기 바람 ② 배차신청 후 차량운행일지와 연동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배차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바람	① 개선요구 ② 통보
10	선택적복지포인트의 효율적 관리 추진	◦ 선택적복지포인트 사용 시 단순 실수로 인하여 포인트를 손해보는 직원이 없도록 포인트 사용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포인트 오류 사용을 정정함 - 2주 단위 정산 및 관련 지침 교육 실시 등	◦ 대상자에게 표창('26.2.1. 예정)	① 통보 (모범사례)
11	출장 정산 절차 간소화	◦ 출장 운임비 정산 시 사용자가 출장일 기준 국내 유가를 직접 조회하여 자가용 운임비를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- 출장증명서 시스템 직접 등록, 출장일 기준 유가 및 유종별 연비 자동 적용, 주요 출장지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 자동 입력 등 출장 정산 절차 개선	◦ 대상자에게 표창('26.2.1. 예정)	① 통보 (모범사례)

나. 현지조치 내역

연번	제목	상세내역
1	장애인 고용 및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 능동적인 대처 권고	◦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,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0.76%이고, 고용부담금도 2억원이 넘어감에 따라 능동적인 고용노력이 요구되며,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현황 역시 0.94%로 의무고용 비율을 미치지 못함 ◦ 이에,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및 채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채용·직무 재설계 및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고용을 실천할 것을 권고함
2	징계의 종류 중 '파면' 삭제 권고	◦ 기획평가원의 징계 종류는 견책, 감봉, 정직, 강급, 강등, 해임, 파면의 7단계로 되어 있음 ◦ 그러나 파면과 해임은 '구분 실익'이 없으며 운영에 있어 '파면'은 사문화 되었음 - 기획평가원 25년간 징계집행 현황 중 '파면'은 전무함 - NST산하 출연(연)(25개 기관)의 경우 징계에 '파면'이 없음 ◦ 향후「징계요령」개정 시 하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- 인사규정 제40조(징계종류), 퇴직금지급규정 제7조(지급제한)